Chapter 01

경찰학의 기초이론

제1절 경찰학의 등장

Ⅰ 경찰학의 기원

17~18C

- 절대군주국가시대의 통치학
  - ➡ 관방학 : 오늘날 경찰학의 학문으로 첫 출발
    - ↳ 오늘날 경찰학과는 목적, 내용, 적용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 관방학자인 유스티(Justi)의 『경찰학의 원리』에서 기원을 찾아볼 수 있음
  - ↳ 처음 경찰학 용어 등장

⬇

① 군주의 통치철학으로 성립
② 내무행정 전체를 대상
③ 절대주의적 국가권력을 기초지우는 학문으로 성립

Ⅱ 각국의 경찰학 연구

각국의 연구

- 영국 : 범죄학의 일부분**으로 연구**
- 미국 : 형사사법학 또는 경찰행정학의 일부분**으로 연구**
- 독일 : 법학과 행정법학의 일부분**으로 연구**

☞ **각국의 경찰학 연구는 독립(자)적으로 연구하였다.**(×)

Ⅲ 경찰학의 연구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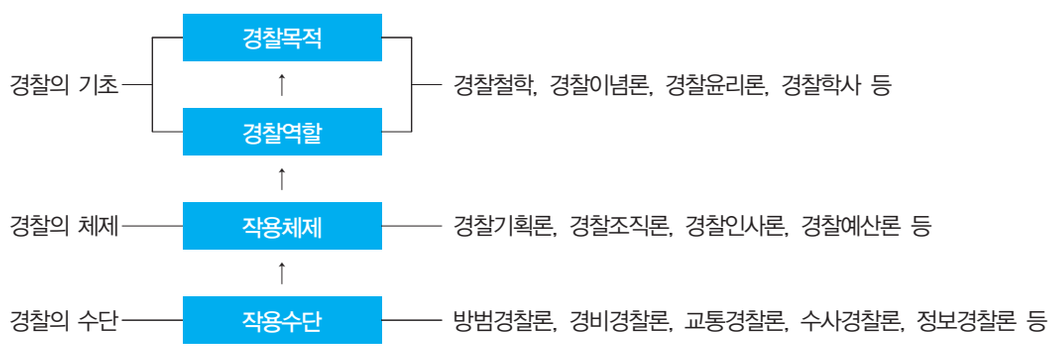

※ 자료 : 김충남(2004), 경찰학개론, p.17

Ⅳ 경찰학의 접근방법

1. 역사적 접근방법

의의	과거의 경찰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평가 · 기술하는 동시에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접근방법
내용	㉠ **각종 경찰제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 제도가 형성되어 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유일한 수단을 제공**해 준다. [11.8 순경] ㉡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어 **과거의 충분한 이해가 현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인간행태에 초점을 두는 미시적 연구가 아닌 **사회제도 또는 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정책연구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11.8 순경]

2. 행태론적 접근방법

의의	경찰조직 구성원의 행동양식의 연구에 초점을 두는 접근방법
특징	㉠ **경찰현상을 비롯한 사회적 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간주**한다. [11.8 순경] ㉡ 사회현상을 관할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보고,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해야 하며, 인식론적 근거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11.8 순경] ㉢ 행태주의는 명백한 자극과 반응으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 또는 행동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심리학적 행동주의와 달리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태도, 의견, 개성 등도 행태에 포함시킨다. ㉣ 전술한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명백히 구분하고, 가치중립성을 지키고 있다. ㉥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사용하며, 자료를 계량적 방법에 의해 분석한다. ㉦ 형태주의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은 방법론적 개체주의 시각을 견지한다.

3. 법률적 접근방법

의의	법치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찰국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접근방법**이고 또한 **가장 오래된 접근방법**
장점	㉠ 경찰현상을 분석하는 민주이론과 양립되어 조화를 이룬다는 점 ㉡ 시민은 물론 경찰관의 권익을 보장함 ㉢ 경찰행위와 결정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법령을 분석
단점	㉠ **경찰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편협하고, 왜곡되기 쉽다는 점** [11.8 순경] ㉡ 법적 기준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해석이 어렵다는 점 [11.8 순경] ㉢ 경찰과정의 **역동적 측면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 즉, 경찰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결정이나 가치갈등 같은 **동태적 측면들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 [11.8 순경]

4. 체제론적 접근방법

의의	연구의 기본적 관점을 체제로 파악하며, 특히 **오늘날 중요시되는 접근방법**
내용	정체사회와 제도의 관념을 부인하고,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사회가 변동한다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5. 제도적 접근방법

의의	경찰제도를 중심으로 서술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과 관련된 각종 기관이나 직제에 비중**을 두고, 그에 대한 구체적 기술에 관심을 갖는 접근방법
장점	제도나 법규에 관한 자료는 도서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 용이하다는 점
단점	㉠ 공식적 제도나 법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태적임** ㉡ 제도 이면의 **동태적 측면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 제도와 실제 간의 괴리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 자료 : 김충남(2004), 경찰학개론, p.20~25

제2절 경찰의 개념

Ⅰ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천★★

고대시대

① 라틴어인 politia에서 유래 [09.1 승진, 08.1 경간부, 07.3 경간부, 06.8 순경, 05.7 경간부]

② 모든정치(헌법) [14.1 승진, 09.1 승진]

⬇

중세시대 (14C말~16C)

① 프랑스(14C말) : **국가목적, 국가작용,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 [17. 경간부, 09.1 승진, 07.3 경간부, 06.8 순경]

↓ (15C말 : 계수) [10.1 승진]

② 독일(16C) : 제국경찰법(1530)에 의해 **일체 국가작용(교회행정 제외)** [14.2 경간부, 07.3 경간부, 06.8 순경, 05.7 경간부, 04.11 순경, 02.1 승진]

⬇

경찰 국가시대 (17~18C중)

절대군주시대 (국가기능이 전문 · 분업화)

㉠ 절대군주제의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경찰로서 통치권의 전반을 행사하는 이른바 경찰국가시대가 도래 [10.1 승진, 08.1 경간부, 07.3 경간부, 05.7 경간부]

㉡ 관료는 국왕의 절대적 권력에 복종, 국민에 대해 포괄적인 권한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관계에 간섭하고 지배하였다. [05.2 경간부, 03.1 승진]

- 헌정 (정치)
- 행정
  - ① 군사 / ② 사법 / ③ 재정 / ④ 외교 → 국가 목적작용 제외 [07.9 순경]
  - ⑤ 내무행정 [14.1 승진] [09.3 순경] [09.1 승진] [06.10 순경] [04.11 순경] [03.1 승진] → 사회 목적작용
    - 복지행정 (적극적 복지증진)
    - 경찰행정 (소극적 질서유지)

⬇

법치국가 (18C말~19C) [08.1 경간부]

계몽주의 철학 등장 → 법치국가 도래(시민의 주체성 회복) [14.1 승진, 12.8 순경]

→ 자연법사상, 권력분립주의, 자유주의 등의 영향으로 경찰분야에서도 적극적 복지경찰분야 제외 [14.1 승진, 08. 7 순경, 06.8 순경, 03.1 승진] →

소극적 질서유지를 위한 위험방지 분야 한정(치안행정) [14.1 승진, 09.3 순경, 04.11 순경, 03.1 승진]

⬇

2차 대전 이후 (20C)

비경찰화과정 [17. 경간부, 15.9 순경, 14.1 승진, 12.8 순경, 09.3 순경, 07.3 경간부, 01.10 순경]

[협의의 행정경찰(영업, 건축, 보건, 위생, 도로, 산림 등)] → (다른 행정관청으로 이관)

→ **보안경찰** 임무에 국한 (협의의 행정경찰 제외)

☞ 경찰개념은 시대성 · 역사성을 반영하며, 일률적 정의가 곤란한 다의적 개념이다. [14.1 승진]

▶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변천과정 총정리**

시대	경찰개념	특징
고대국가시대	국정 전반	경찰과 다른 국가작용의 미분화
중세국가시대	모든 국가작용(교회행정을 제외)	
경찰국가시대	내무행정전반(소극적 + 적극적)	경찰과 다른 국가작용의 분화
법치국가시대	소극적인 질서유지에 한정(위험방지)	
2차 대전 이후	보안경찰	

1. 치안행정 : 소극적 위험방지분야에 한정 [04.3 순경, 03.1 승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1794)	독일에서는 칸트 등의 계몽주의와 자연법 사상하에서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4.2 경간부, 12.8 순경, 10.1 승진]
최와형벌법전 (=경죄처벌법전) (1795)	프랑스의 죄와형벌법전에서 "경찰은 **공공의 질서 · 자유 · 재산 및 개인의 안전의 보호**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2 경간부, 09.1 승진] ① **행정 · 사법경찰의 구별을 처음으로 법제화** [14.1 승진, 09.3 순경] ② 일본의 행정경찰규칙의 모범 ③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1850)	1850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을 제정할 당시 정부의 설명도 **경찰의 영역이 거의 무제한적**이라고 하여, **경찰의 영역이 소극적 질서유지와 적극적 복리작용을 규정**하였다. 결국 경찰의 개념은 **절대국가시대 초기로 회기**하기에 이른다.
지방자치법전 (1884)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에서 "자치제경찰은 **공공의 질서 ·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고 있으나, 역시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7. 경간부, 14.2 경간부, 14.1 승진, 10.1 승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소극적 질서유지)

2. 경찰권에 관련된 기타 중요 판례 [03.11 순경]

크로이쯔베르크 (Kreuzberg) 판결(1882)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 :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인 위험방지에 한정**된다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 [17. 경간부, 14.2 경간부, 07.12 순경, 02.1 승진, 01.1 승진]
맵(Mapp)판결(1961)	불법수색과 불법압수로 수집한 증거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는 판결
Escobedo판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
Miranda판결	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자백의 임의성과 관계없이 채취과정에 **위법이 있는 자백을 배제**하게 된 판결
미망인판결 (Witwen Urteil)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원고의 신뢰보호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
띠톱사건	독일에서 **최초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사건
인구조사판결(1983)	인구조사판결은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수집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 [10.1 승진]
Blanco판결	공무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라는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된 판결

Ⅱ 대륙법계 경찰개념과 영미법계 경찰개념★ [12.8 순경, 03.11 순경]

	대륙법계(프, 독)	영미법계(영, 미)
개념	전통적 개념	현대적 개념
중심학자	행정법학자 중심	행정학자 중심
경찰권 기초	**통치권적**	**자치권적**
경찰의 개념	**경찰은 무엇인가?** 경찰권의 **발동범위 · 성질을 기준**으로 형성	**경찰활동은 무엇인가?** **= 경찰은 무엇을 할 것인가?** 경찰의 **역할 및 기능을 기준**으로 형성 [10.1 승진, 08.7 순경, 08.1 경간부, 07.9 순경, 07.3 순경, 02.5 순경]
임무	공공의 안녕 · 질서유지(**국가안전**)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개인안전**)
수단	**권력적 작용(명령, 강제)**	**비권력적 작용**(서비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	**행정, 사법 구분(○)** 행정경찰만 경찰의 고유한 임무로 봄	**행정, 사법 구분(×)** 행정 · 사법(수사)경찰 모두를 경찰의 고유한 임무로 봄
시민과의 관계	**경찰과 시민은 대립관계** **(객체)**	**경찰과 시민은 상호 협력 및 동반자 관계** **(주체)**
관계	**대립**, 반비례, 수직	동등(동반자), 비례, 수평
역사	경찰권 발동범위 **축소** 역사	경찰권 활동범위 **확대**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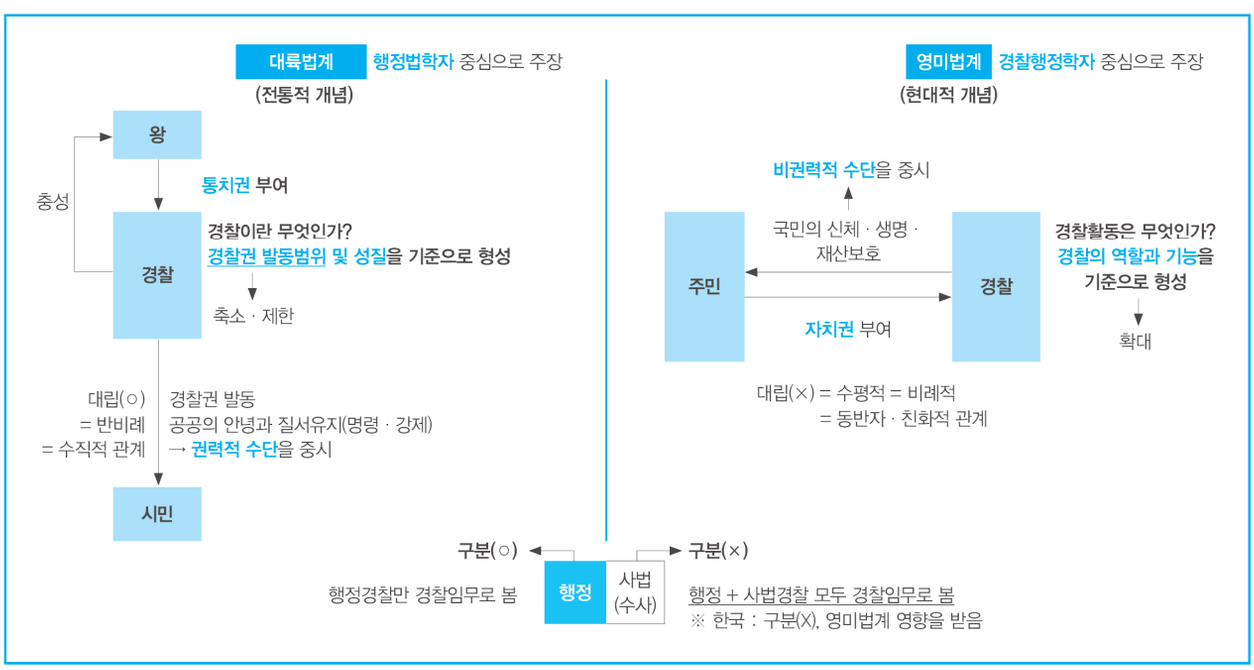

Ⅲ 한국의 경찰개념의 형성

근대적 경찰개념 및 제도도입	한국에서 근대적 경찰개념 및 제도가 도입된 것은 **갑오경장(1894) 이후**이다.
대륙법계의 영향	① **프랑스와 독일의 경찰개념이 일본에 계수**되었고, **한국 경찰개념은 일본을 통해 계수**되었으므로 **대륙법계 경찰개념을 전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행정경찰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죄와형벌법전(1795)에서 유래**되었다. ☞ 프랑스의 죄와형벌법전(1795) →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 → 조선의 행정경찰장정(1894) ③ 독일의 경찰개념은 **일본을 경유**하여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 ☞ 독일(프로이센) : 일본의 행정집행법(1900) → 일본의 행정집행령(1914) → 일본의 경찰관등직무집행법(1947) → 한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1953)
영미법계의 영향	① 미군정시기 1953년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보호라는 **영 · 미법계의 사고가 최초로 반영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으며, 조직법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없으며, 양 사무를 보통경찰기관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 ② **범죄수사가 경찰의 사무관할로 규정된 것은 영 · 미법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Ⅳ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구분★★

구분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구별 기준	**조직중심 – 어디서 하느냐?**	**작용중심 – 무슨 일을 하느냐?** [17. 승진]
의의	실정법(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정부조직법 등)상 **보통경찰기관(경찰청, 시 · 도 경찰청, 경찰서)에 분배되어 있는 모든 작용** [17. 승진, 15.1 승진, 14.2 경간부, 14.1 승진, 12.2 순경, 10.3 순경, 10.2 경간부, 10.1 승진, 09.2 경간부, 07.3 순경, 05.10 순경, 05.3 순경, 03.3 순경]	**일반통치권을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 [17. 승진, 15.1 승진, 14.1승진, 11.2 순경, 10.3 순경, 10.2 경간부, 10.1 승진, 07.9 순경, 03.3 순경] ➡ 특별권력에 의거하여 명령 · 강제하는 활동(의원경찰, 법정경찰 등)은 제외
성질	① **실무상 개념**이며, **조직을 중심**으로 **역사적 · 제도적인 면**에서 정립된 개념 [14.2 경간부, 10.2 경간부, 08.10 순경, 05.10 순경] ② 각국마다 시대와 역사에 따라 다르며, **유동적 · 상대적 개념** [14.3 순경, 10.3 순경, 03.3 순경]	경찰개념을 조직이 아닌 **작용 · 성질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 **이론적 · 학문적인 면**에서 정립된 개념이며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 [17. 승진, 15.1 승진, 14.3 순경, 10.2 순경, 10.1 승진, 08.7 순경, 05.10 순경, 05.7 순경, 05.3 순경, 03.3 순경]
범위	① **소극적 질서유지 + 적극적 서비스** [08.10 순경, 05.10 순경, 05.7 순경] ②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직무범위 ③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성질을 가진 것 ④ 권력작용과 무관해도 경찰조직이 현실적으로 수행한다면 경찰로 봄(봉사, 지원, 정보경찰, 보안(대공)경찰) [14.3 순경, 14.2 경간부]	① **소극적으로 사회공공의 현재 및 장래**의 안녕 ·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목적적 작용** [10.2 경간부, 10.1 승진] ➡ **적극적 복리작용(×), 사법(수사)작용(×) 외사, 정보, 보안(대공) 등의 국가목적적 작용(×)** ② **경찰조직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의 권력작용(명령, 강제)을 포함하는 개념** ➡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일반행정기관이라는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본 실질적 경찰개념을 의미함 [15.1 승진, 14.2 경간부, 14.1 승진]
예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직무범위 6가지	건축경찰, 위생경찰, 산업경찰, 철도경찰, 산림경찰, 경제경찰 등

▶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비교 [10.1 승진, 09.2 경간부, 08.10 순경, 08.7 순경, 07.3 순경, 05.7 순경, 05.3 순경, 02.5 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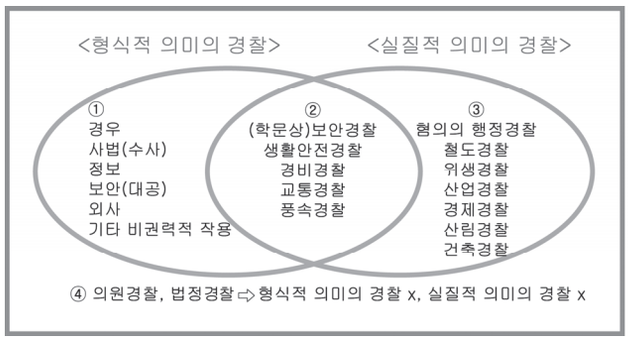

① ⇨ 방법순찰, 경찰지도
교통정보제공
어린이교통교육
② ⇨ 경찰허가(총포 등 소지허가)
경찰하명, 경찰상 강제집행
경찰상 즉시강제

※ 자료 : 김은표(2010), 멘토 경찰학개론, p.6

⋯› **의원경찰, 법정경찰** : ① 특별권력에 기초 ② 내부질서유지가 목적 ③ 원칙적으로 일반경찰권에 우선 [03.2 경간부]

⋯›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14.3 순경, 11.2 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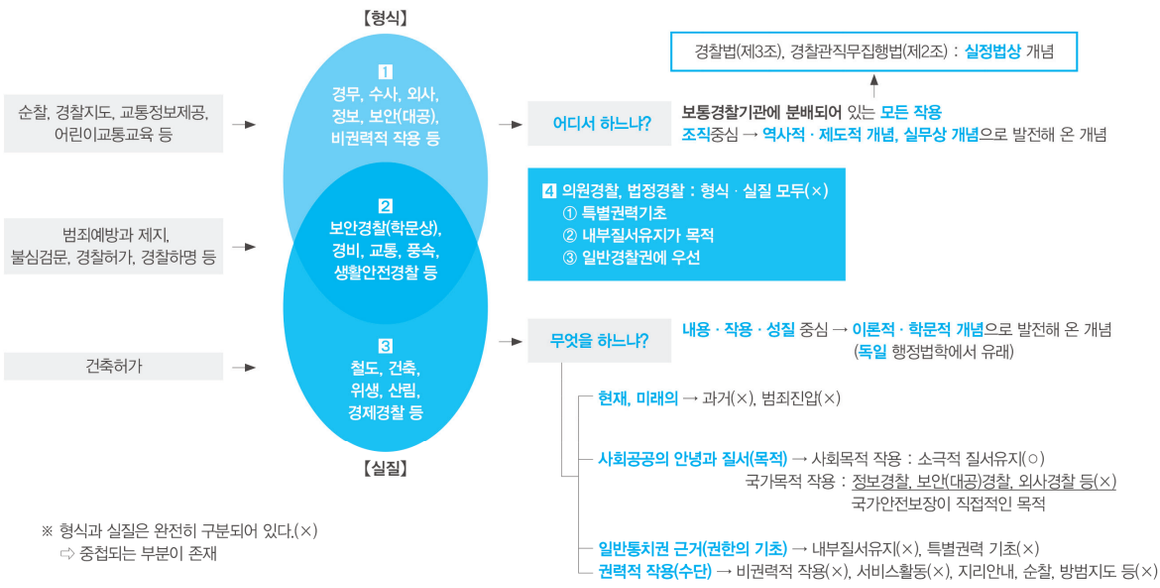

※ 형식과 실질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

Ⅴ 경찰의 분류★★ [07.10 순경, 03.2 경간부]

1. 직접적인 목적 [12.2 순경, 06.10 순경, 03.1 승진]

(광의) 행정경찰	① 공공질서의 유지 및 범죄예방을 목적 ② 각종 경찰법에 의하여 적용 ③ 현재 및 장래의 사태에 대하여 발동하는 작용 ④ 경찰청장의 지휘 및 감독 ⑤ 실질적 의미의 경찰
사법경찰	① 범죄의 수사 및 체포를 목적 ② 과거의 사태에 대한 작용 ③ 형사소송법에 의한 권한 행사 ④ 검사의 지휘 및 감독 ⑤ 형식적 의미의 경찰 [14.1 승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이며, 한국은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즉 보통경찰기관인 경찰청 조직의 임무범위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7. 승진, 12.2 순경]

2. 업무의 독자성 [17. 승진, 12.10 순경, 12.2 순경, 11.2 순경, 07.9 순경]

보안경찰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않음(독자성○), 조직상 보통경찰기관이 관장, 형식(○), 실질(○) [02.7 순경] 예 생활안전, 교통, 경비, 정보, 보안(대공), 외사, 소방
협의의 행정경찰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독자성×), 조직상 일반행정기관이 담당, 형식(×), 실질(○) [03.4 순경, 99 승진, 97 경위] 예 건축, 위생(보건), 관세, 산림, 경제, 공물, 철도경찰 등

3. 경찰권의 발동시점 [17. 승진, 12.10 순경, 08.2 경간부, 02.5 순경]

진압경찰	범죄수사를 위한 권력적 작용 예 범죄제지, 범죄의 진압 및 수사, 피의자의 체포 등
예방경찰	사전 범죄예방을 위한 권력적 작용 예 정신착란자 · 주취자를 경찰이 보호조치 시키는 경우, 총포 · 도검 · 화약류 취급제한, 가축의 도살처분 등 [11.2 순경, 02.2 경간부]

4.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 [18. 순경, 17. 승진, 12.10 순경, 12.2 순경, 02.5 순경]

질서경찰	강제력을 수단으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법집행, 권력적 작용 예 범죄수사, 다중범죄진압, 교통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 등
봉사경찰	강제력이 아닌 계몽, 지도 서비스 수단으로 하는 비권력적 작용 예 방범지도, 청소년 선도, 교통정보의 제공, 방범순찰, 수난구호 등

5. 위해정도, 적용법규, 담당기관 [12.10 순경, 08.2 경간부]

비상경찰	전시, 계엄법, 군대
평시경찰	평온한 상태, 일반법규, 보통경찰기관

6. 권한과 책임의 소재 [16.3 순경, 12.10 순경, 10.3 순경, 09.3 순경, 08.2 경간부, 03.7 순경, 03.1 승진]

국가경찰	중앙정부, 집권형 → 능률성(↑), 민주성(↓), 전국적 조직, 대륙법계의 국가
자치경찰	지방정부, 분권형 → 능률성(↓), 민주성(↑), 지역적 조직, 영미법계의 국가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비교**

	국가경찰	자치경찰
권한과 책임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	중앙집권적 단일화된 명령체계	자치단체별 지방분권적 조직체계
역할	국민의 보호와 국가적 질서유지	국민의 보호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수단	명령 · 강제라는 권력실행적 수단	권력적 수단보다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
장점 [15.1 승진]	㉠ 강력한 집행력 행사가 가능하고 비상시 유리 [16.9 순경, 97.1 승진] ㉡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조직운영 · 관리 [15.1 승진, 03.1 승진] ㉢ 경찰활동의 기동성과 능률성 발휘 ㉣ 전국적 통계자료의 정확성 [16.9 순경, 03.1 승진] ㉤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 · 조정이 원활 [16.9 순경, 03.1 승진] ㉥ 다른 지방자치경찰과의 협조가 원활 ㉦ 경찰기관사이의 협조성 ㉧ 업무집행의 통일성 [15.1 승진, 01.1 승진]	㉠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행정이 가능 [03.1 승진, 97.1 승진] ㉡ 지역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감이 높음 ㉢ 자치단체별로 독립되어 있어 조직 운영의 개혁이 용이 [16.9 순경, 97.1 승진] ㉣ 인권보장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의 지지가 용이 [97.1 승진] ㉤ 주민의견 수렴이 용이하여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쉬움 [10.3 순경] ㉥ 재원과 책임의 분담 [02.1 승진] ㉦ 경찰과 시민과의 유대강화 [15.1 승진, 02.1 승진] ㉧ 주민협력 치안 활성화 [02.1 승진]
단점	㉠ 경찰 본연의 업무 이외 타행정 업무에 이용 [03.7 순경] ㉡ 지방 실정에 적합한 치안행정 수립 곤란 ㉢ 관료화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 의식 희박 [03.7 순경] ㉣ 각 지방의 특수성과 창의성의 저해 [03.7 순경] ㉤ 조직이 비대화되고 관료화 될 우려가 큼	㉠ 집행력과 기동성이 약함 [05.1 승진] ㉡ 전국적 · 통일적 · 광의적 경찰활동 곤란 ㉢ 지방세력가의 경찰행정 개입으로 경찰부패 초래 ㉣ 전국적 통계자료의 정확성의 곤란 ㉤ 다른 경찰기관 및 국가행정기관과의 협조, 응원체제가 곤란 [05.1 승진, 03.7 순경, 99.1 승진] ㉥ 기동화, 광역화범죄에 대처하기 어려움 ㉦ 전국적인 범죄예방과 대응능력의 분산

참고

우리나라는 현행 경찰법에서는 시 · 도 경찰청장의 소속을 시 · 도지사로 하고 있음으로 자치경찰제적 요소를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국가경찰제도이며, 자치경찰제도(제주특별자치도)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7. 보호되는 법익의 가치

고등경찰	정치, 사상 예 사상 · 종교 · 집회 · 결사 · 언론 · 출판 등에 관계된 경찰작용
보통경찰	사회, 개인 예 교통경찰, 풍속경찰 등

8. 담당기관 및 질서유지 범위

일반경찰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공무원에 의한 일반 공안유지활동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찰활동

제3절 경찰의 임무

Ⅰ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15.9 순경, 10.3 순경, 09.1 승진, 07.12 순경, 06.10 순경, 03.11 순경]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2021) [96.1 승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1953) [06.10 순경]
1.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1.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2.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 · 요인경호 및 대간첩 · 대테러 작전 수행	4.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 · 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의 안녕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5. 공공의 안녕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 경찰의 임무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제29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 한국은 영 · 미법계의 영향을 받아 범죄수사가 경찰의 임무(사물관할)로 규정되어 있다.

Ⅱ 경찰의 기본적 임무★★

1.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궁극적인 목적)

1) 공공의 안녕(성문법규의 총체) – 국가, 집단, 개인과도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중적 개념) [03.11 순경]
(기속에 따른 경찰작용)

의의		① 법질서, 권리, 각 개인의 법익, 국가 또는 기타 공권력 주체의 기관과 집행의 불가침성을 의미한다. ② 공공의 안녕은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보호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법익의 불가침 (제1의 요소)	공법규범 위반	① 경찰개입(○) ② 경찰의 활동은 형법적 가벌성의 범위 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나 정보, 보안, 외사의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07.12 순경, 03.1 승진]
	사법규범 위반	① 원칙 : 경찰개입(×), 사법질서의 침해는 민사법원에 의해 보호가 된다. ② 예외 : 경찰개입(○) –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개입이 가능하다. ▶ 보충성의 원칙 [05.3 순경, 02.5 순경, 02.3 순경] 사법상의 문제에 대한 경찰권의 개입은 다른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다른 조치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즉, 경찰의 원조 없이는 법을 실현시키는 것이 무효화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질 경우에 최소한도에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는 원칙
국가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	국가존립	① 경찰은 사회공공과 관련하여 국가의 존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군대는 적국과의 관계에서 국가의 존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② 국가존립에 관한 침해에 대하여는 대내적으로 내란의 죄, 대외적으로 외환의 죄를 형법상 규정하고 있다. ③ 경찰은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나 정보, 보안, 외사활동을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의 기능성	① 경찰은 국가기관 즉, 정부, 국회, 법원, 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발휘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② 주의할 것은 위험이라고 판단하여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위험의 범주를 너무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

개인의 권리 및 법익의 불가침	①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지적재산권 보호)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 [03.3 순경, 03.1 승진, 02.5 순경] ②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동시에 형법이나 행정법 등의 공법규범을 위반한 경우 보충성의 원칙은 적용이 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02.5 순경] ③ 사적인 문제의 경우는 개인이 효과적인 보호시기를 놓쳐 권리가 무효화될 우려가 있을 때에만 경찰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경찰의 원조는 잠정적 보호에 그쳐야 한다.** 즉,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한다.

2) 공공질서(불문법규의 총체) –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 개념 [09.1 승진, 03.11 순경]
(재량에 따른 경찰작용)

의의	① 공공질서라 함은 **시대의 지배적 윤리와 가치관**에 따를 때, 인간의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을 말하며, 공공사회에서의 각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15.1 경간부, 03.11 순경] ②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이지, 절대적 ·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다. [15.1 경간부] 예 과거에는 장발이나 미니스커트가 단속의 대상이 되었으나, 현재에는 단속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적용한계	① 오늘날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해 법적 규범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15.1 경간부, 09.1 승진, 03.11 순경] ②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보아 법규범이 아닌 사회규범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을 경찰권력에 의해 강요할 수 없으므로, 통치권의 집행을 위한 개입의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은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받는다. [15.1 경간부, 09.1 승진, 03.11 순경]
경찰의 개입 여부	공공질서 위반 시 경찰의 개입에 대해서는 **경찰권의 재량적 결정**에 맡겨지나, 기본적 인권의 **헌법적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청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에 따라야 한다.

3) 위험방지

개념	경찰상의 위험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또는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로서, **경찰상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말하며, **경찰개입의 전제조건**이 된다. [17. 승진, 02.11 순경, 01.11 순경] 경찰은 **경찰책임자에 의해 야기되지 않는 위험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15.1 경간부, 15.1 승진, 06.10 순경]
	경찰법상의 손해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며 **보호법익의 현저한 침해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17. 승진]
	위해 (경찰위반)	위험과 장해(이미 침해가 발생된 상태)를 말한다.
위험의 현실성	추상적 위험 이전상태	위험의 존재는 경찰개입의 최소요건으로 위험 이전 단계에서 사전배려차원의 개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06.10 순경, 01.11 순경] **구체적 또는 추상적 위험이 존재할 때 개입이 가능**하다. → 사전배려의 원칙 인정(×) [예외 : 환경행정분야 인정(○)]
	추상적 위험	위험 가능성 존재 – 경찰개입을 위한 최소요건 [17. 승진, 15.1 경간부, 06.10 순경, 02.11 순경, 01.11 순경] [사례] 차가 다니지 않는 야간에 보행자가 빨간 불에 차도를 건너는 경우 **구체적 위험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경찰책임자가 되어 경찰의 단속대상이 된다.** 이유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서 법질서의 불가침성의 침해, 그리고 공공의 안녕의 보호법익인 도로교통을 침해하였기 때문이다. 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여야 한다. [02.11 순경]
	구체적 위험	① 위험 존재 – 경찰개입을 위한 요건 [02.11 순경] ② 경찰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위험이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7. 승진, 06.10 순경, 02.11 순경, 01.11 순경]